

## [한국실업축구연맹 경기 규정]

### 제1조 [경기장의 유지]

내셔널리그 구단(이하 구단)은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 제2조 [경기장]

① 내셔널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종합운동장 및 축구전용구장에 준하는 시설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② 경기장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홈 구단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해 관중상해보험 혹은 이에 준하는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험증권 혹은 그에 준하는 자료를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연맹에 제출함을 권고하고, 향 후 연맹이 정하는 시기에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연고지역 외 기타 경기장에서 내셔널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맹에 경기개최 승인 요청 시, 위와 같이 진행한다.

④ 경기장은 연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최소100m ~ 최대110m - 권장 105m), 너비(최소 64m ~ 최대75m - 권장 68m)를 준수한다.

2) 공식경기의 잔디 길이는 2~2.5cm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체에 걸쳐 동일한 길이어야 한다.

3)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 12cm미만)의 철제 관으로 제작되고, 원칙적으로 고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철제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4)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풀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코너 깃발은 연맹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 이어야 한다.)

⑤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⑥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 살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살수시에는 경기감독관에게 사전통지를 통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간 및 날씨, 그라운드 상태, 당일 경기장 행사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정하고 허가한 경우 홈 구단 및 원정 구단 관계자들에게 사전 통보한다.

2) 살수는 경기 킥오프 전 하프타임에 실시하며, 경기장에 걸쳐 균등하게 해야 한다. 단,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횟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홈 구단은 경기감독관이 정한 횟수와 시간에 따라 살수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연맹 상별위원회를 통해 구단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⑦ 홈경기 개최 구단은 홈 경기장내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선수 및 심판대 기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샤워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 ⑧ 홈경기 구단은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홈경기 제반시설(부대시설 등) 및 제작물 등의 설치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최측(경기감독관 등)이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사항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 ⑨ 경기장내 관중석은 5,000석 이상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 ⑩ 모든 경기장은 야간경기 진행에 문제가 없는 시설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 제3조 [경기장 부대시설]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 ① 운영본부실 (필수)
- ② 양 팀 선수대기실 (필수)
- ③ 심판대기실 (필수)
- ④ 실내 워밍업 지역
- ⑤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석 및 매치 코디네이터석(연맹 경기총괄인원석) (필수)
- ⑥ 기록석 (필수)
- ⑦ 의무실
- ⑧ 도핑검사실
- ⑨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 ⑩ 실내 기자회견장
- ⑪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 ⑫ 중계방송사룸(중계스테이프용)
- ⑬ VIP룸
- ⑭ 기자석(메인스탠드 중앙부로 경기장 전체가 관람 가능하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한편, 전원 및 노트북 등이 설치 가능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을 것) (필수)
- ⑮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필수)
- ⑯ TV중계용 방송 부스
- ⑰ 전광판 (필수)
- ⑱ 출전선수명단 게시판
- ⑲ 태극기, 리그 깃발, 구단기를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필수)
- ⑳ 입장권 판매소
- ㉑ 종합 안내소
- ㉒ 관중을 위한 의무실
- ㉓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 ㉔ TV카메라 설치 공간 (필수)
- ㉕ TV중계차 주차장 공간 (필수)
- ㉖ 케이블 시설 공간 (필수)
- ㉗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필수)
- ㉘ 냉·온수 샤워시설 (필수)

#### **제4조 [조명장치]**

- ① 야간경기를 희망하는 구단은 그라운드 평균 1,0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위에 준하는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홈 구단은 야간경기 진행 전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 [벤치]**

- ①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벤치는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한다. (단,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홈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연맹의 승인을 득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변경 할 수 있다.
  -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 한다.
  - 2)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단,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3) 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 **제6조 [의료시설]**

홈경기를 실시하는 구단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60분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특수구급차 및 예비차량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또한, 선수단, 관계자, 관중을 위한 응급실을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

#### **제7조 [원정 구단을 위한 관객석 확보]**

홈팀은 원정팀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관객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정팀 관중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제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 ① 홈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 항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소개
  - 2) 대회일반사항
  - 3) 선수 및 심판 교체
  - 4) 득점안내
  - 5) 추가시간

- 6) 다른 공식경기의 결과
- 7) 관중 수(후반전 15분 - 아나운서 및 전광판 표출)
- 8)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방안
- 9) 상기 항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 ② 홈 구단은 시합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1) 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 2)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 3) 음악방송
  -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 5) 상기 항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 ① 홈 구단은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여 경기개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경기장 시설 현황
  - 2) 홈경기 안전계획서
- ② 연맹은 법령 및 연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의해 시즌 개막 15일 전까지 각 구단의 홈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공식 경기 개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공식경기 개최를 불허하며, 제 10조에 의한다.
- ④ 연맹의 최초 승인을 받은 경기장은 5년 이후 추가 점검을 진행하며, 새로운 경기장의 사용시 위1,2,3항에 따라 진행한다.

**제10조 [경기장 점검]**

- ① 홈 구단이 기타 경기장에 내셔널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 ②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구단은 연고지역 내에서 연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1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홈 구단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 2항에 따른다.
- ④ 앞 3항을 이행하지 않는 구단은 제31조 1항에 따른다.

**제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식경기]**

연맹의 공식경기란 다음의 경기를 말한다.

- 1) 내셔널리그
- 2) 내셔널축구선수권대회
- 3) 상기 항 이외 연맹이 지정한 경기

#### **제13조 [참가 의무 등]**

- ① 구단은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공식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 ② 구단은 소속 선수가 대표팀 또는 선발팀 등의 일원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의무가 있다.

#### **제14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며, 홈 구단은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구단의 주관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구단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연고지역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연맹에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③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기는 연맹이 주관한다.

#### **제15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 **제16조 [출전자격]**

- ① 연맹 정한 참가신청 요건을 완료하여, KFA 및 연맹에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② 연맹 정한 참가신청 요건을 완료하여, KFA 및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 및 팀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 ③ 제재중인 지도자 및 팀스태프(이하 코칭스태프)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출전정지제제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선수대기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그라운드에서 사전 훈련 및 경기 중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 2) 본 항 1호를 위반한 코칭스태프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 **제1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구단 및 원정 구단은 경기개시 6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선수,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 및 팀스태프의 수를 최대 7명(의무, 통역 제외)까지로 한다.
-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승인 후 변경할 경우

FIFA 경기규칙에 의한다.

- ④ 출전선수명단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규정을 준수한다.
-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 [유니폼]**

- ① 모든 공식경기에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상기 1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 (1~99번에 한함)와 일치한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③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 ④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구단은 주/보조 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하며, 경기 전 연맹(경기감독관) 및 상대 구단과 유니폼 착용 색상과 관련하여 사전 조율하여야 하며, 조율되지 않을 경우, 연맹(경기감독관)이 최종 결정한다.
- ⑤ 동절기 방한용 내피 상의 또는 하의(타이즈)를 착용하고자 할 때는 유니폼(상/하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⑥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 **제19조 [사용구]**

공식경기 사용구는 연맹에서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 **제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 ① 홈 구단은 반드시 연맹의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맹 상벌 위원회에 회부된다.
- ② 홈 구단은 경기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③ 홈 구단은 상기 1,2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연맹, 구단, 선수, 팀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시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⑤ 경기 감독관은 상기 4항에 해당하는 사안을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구단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구단은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⑥ 상기 4,5항의 사안이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구단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⑦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 **제21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연맹이 정한다.

### **제22조 [경기일정 준수]**

구단은 제22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①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구단의 합의 후 연맹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연맹이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연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에서 부담한다.

② 공식경기의 일시의 변경 신청은 해당경기 개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맹은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당 경기일 10일전까지 해당 구단에 통보한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③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항,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 **제24조 [경기시간 준수]**

① 모든 클럽은 대회규정에 명기된 경기시작시간과 경기 중 휴식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구단은 1회 경고 후, 제재금(1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구단이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 **제25조 [혼합개최 금지]**

공식경기는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및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 할 수 없다.

### **제26조 [경기감독관]**

①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② 경기감독관은 KFA에서 정한 감독관의 의무와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제27조 [경기중지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

에 의해 경기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중지를 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재경기]**

① 공식경기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②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등 점검미비에 따른 홈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팀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③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전 경기에서 양 구단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2) 이전 경기에서 양 팀의 득실차가 있는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3) 1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서 발생한 경고, 퇴장기록만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대회규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 가능하며, 출전선수명단은 이전경기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호의 경우 이전 경기에 발생한 모든 기록이 인정되며 선수교체는 이전 경기를 포함하여 대회규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 가능하며, 이전경기과 출전선수명단은 동일해야 한다.

④ 재경기 시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 **제29조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의 비용의 보상]**

① 홈 구단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구단은 원정 구단의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원정 구단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구단은 홈 구단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유료 관중이 있는 경우 입장권 환불 수수료 포함)

③ 앞 1,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0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①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은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공식경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전한 구단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전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하며, 경기 종료 후 연맹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한다.

③ 앞 1,2항에 따라 어느 한 구단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구단의 선수의 개인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④ 위 2항의 무자격선수는 내셔널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

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 **제31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① 대회 전체 경기수의 2/3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경기는 포기한 구단이 0:3 패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출전, 득점, 경고, 퇴장 등 선수 개인의 경기기록은 인정한다.
- ② 대회 전체 경기수의 2/3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함 팀과의 경기결과를 모두 무효처리한다.
- ③ 위 와 같은 경우 해당 구단은 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 **제32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 **제33조 [대회규정]**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 (대회규정)에 의한다.

### **제34조 [이벤트경기]**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경기의 이벤트경기는 본 대회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